
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

홍보현수막 제작 과업내용서

2025. 1.



안 산 문 화 재 단
Ansan Cultural Foundation

I

과업목적

본 과업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(이하 “발주기관” 이라 한다)과 계약자(이하 “계약상대자” 라 한다) 간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추진을 위한 발주기관과 계약자인 계약상대자 간 옥외홍보물 제작, 설치, 보수, 철수, 안전관리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II

추진방향

- 적재적소 옥외홍보물 배치로 축제 홍보 효과 극대화
- 축제 메인디자인 노출로 관내 축제 분위기 조성
- 설치 후 지속적인 추적 관리로 시민 보행환경 안전 확보

III

과업개요

- 과업명: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홍보현수막 제작
- 과업기간: 계약체결일~2025. 5. 7.(수)
- 과업범위: 홍보현수막 제작, 설치, 보수, 철수, 안전관리
- 추정금액: 금17,000,000원(금일천칠백만원/부가세 포함)
- 계약방법: 2인 견적 수의계약
- 참가자격
 - 안산시 사업자로 등록된 업자
 - 현수막 직접생산확인증명서(5512170601)
 - 옥외광고사업(2604) 업종을 등록한 업체
 -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가입

IV

과업내용

□ 홍보현수막 제작목록

구분	제작명	규격	게시기간	수량(개)
계				250
1	안산시 행정게시대	7,000*700mm	2025. 4. 6.(일)~5. 5.(월)	20
2	안산시 가로등현수기	600*1,700mm	2025. 4. 6.(일)~5. 5.(월)	150
3	안산시 육교현판	12,000*1,200mm	2025. 4. 6.(일)~5. 5.(월)	10
4	안산시 홍보탑	1,150*7,000mm	2025. 4. 6.(일)~5. 5.(월)	4
5	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게시대	3,000*4,000mm	2025. 3. 4.(화)~5. 5.(월)	1
6	안산문화예술의전당 극장외벽	4,500*10,000mm	2025. 3. 4.(화)~5. 5.(월)	1
7	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동 외벽	3,000*8,000mm	2025. 3. 4.(화)~5. 5.(월)	1
8	김홍도미술관 야외게시대	2,500*4,400mm	2025. 3. 4.(화)~5. 5.(월)	1
9	소극장 보노마루 야외게시대	2,700*5,300mm	2025. 3. 4.(화)~5. 5.(월)	1
10	소극장 보노마루 외벽	5,600*400mm	2025. 3. 4.(화)~5. 5.(월)	1
11	안산문화광장 게시대	7,000*700mm	2025. 3. 4.(화)~5. 5.(월)	1
12	안산문화광장 사무실 외벽	5,520*800mm	2025. 3. 4.(화)~5. 5.(월)	1
13	축제 현장 운영 사인물	5,000*5,000mm	2025. 4. 30.(수)~5. 5.(월)	10
14	교통통제 현수막	6,000*900mm	2025. 4. 7.(월)~5. 5.(월)	40
15	행사 현수막	9,000*1,000mm	소요 발생 시	8

※ 설치(크레인포함) 및 철거·유지보수 등 현수막 제작 및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

- ※ 상기 제작규격과 수량은 총 계약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변동될 수 있음
- ※ “발주기관” 이 규격을 재측정하고자 하는 경우, “계약상대자” 는 현장에서 규격을 재측정해야 함

□ 규격, 재질 및 사양

- 기본 사양, 규격, 디자인은 “발주기관” 에서 정한 바에 의함
- 현수막 시안은 “발주기관” 에서 제공한 시안으로 제작하여야 하며, “발주기관” 이 일부 변경 또는 시안을 요청할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
- 현수막은 친환경 현수막천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, 문자 및 색상은 섬세하게 제작
- 현수막 가장자리는 열처리, 재봉 등으로 천이 풀리지 않도록 제작

□ 설치 및 철수

- “계약상대자” 는 “발주기관” 이 지정하는 장소와 기간동안 옥외에 홍보용 현수막 설치
- “계약상대자” 는 시 관할 게시장소에 홍보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시 관리기준 준수(안전수칙, 신고필, 만료기간 도래 시 즉시 철거 등)
- “계약상대자” 는 “발주기관” 이 시 관할 육교현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육교현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, “발주기관” 에게 제출
- “계약상대자” 는 설치한 모든 홍보용 현수막을 촬영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“발주기관” 에게 제출
- “계약상대자” 는 설치한 모든 홍보용 현수막을 2025. 5. 6.(화)

오전 내 철거

□ 안전관리

- “계약상대자” 는 옥외에 설치된 홍보용 현수막 설치 상태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추적 관리
- “계약상대자” 는 설치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하여 옥외광고업 등록과 영업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
- “계약상대자” 는 “발주기관” 이 시민 안전에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 즉각 후속 조치 시행
→ 재계첩, 재출력, 수정 등에 대한 비용 청구 불가

V 추진일정

구 분	2월			3월			4월			5월	
시청 관할 게시대											철수
재단 관할 게시대											철수
교통통제 게시대											철수
축제현장 홍보물											철수
행사 현수막						수 시					

※ 상기 일정은 “발주기관” 과 “계약상대자” 간 상호 합의 하에 변경 가능

VI 수행지침

□ 일반사항

- 본 과업은 관계 규정 및 과업내용서를 준수하되 “발주기관” 과 상호 발전적·전략적 협의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.
-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

있는 경우,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○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.

○ 다음과 같은 경우 “계약상대자” 는 “발주기관” 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.

-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
- “계약상대자” 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

○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로 시행한다.

○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해석은 “발주기관” 의 해석을 우선시한다.

□ “발주기관” 의 의무

○ “발주기관” 은 과업과 관련한 “계약상대자” 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.

○ “발주기관” 은 “계약상대자” 가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□ “계약상대자” 의 의무

○ “계약상대자” 는 “발주기관” 의 지도·감독에 협조하며 과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한다.

○ “계약상대자” 는 “발주기관” 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위임하거나,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○ “계약상대자” 는 과업 수행 중 “발주기관”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부담해야 한다.

□ 저작권

-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“발주기관” 이 소유하며, “계약상대자” 는 “발주기관” 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.
-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“계약상대자” 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.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“계약상대자” 가 피해자 측과 합의 및 배상하여야 한다. 또한, “발주기관” 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.

□ 안전보건

- “계약상대자” 는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.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“발주기관” 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.
- “계약상대자” 는 행정안전부, 소방청, 안산시 등 규정, 규칙, 기타 법령, 지침을 준수 및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.

□ 계약의 해지

- “발주기관” 의 사정변경 혹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이 취소되었을 경우, “발주기관”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“계약상대자” 에게 지급해야 한다. 다만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. “계약상대자” 는 당 조항에서 정하는바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- “계약상대자” 가 이미 용역을 완료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

후 “발주기관” 의 검사를 필요하였을 경우, 검사를 받은 기성부분
- “발주기관” 의 검사를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
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과 지출 증빙이 가능한 투입비용

○ “발주기관” 과 “계약상대자” 는 상대방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을
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유선 및 서면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
요구할 수 있다. 요구사항이 7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,
계약 해지 통보 후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
귀책사유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○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“발주기관” 은 일방적으로
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
“계약상대자”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“계
약상대자” 는 “발주기관” 에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으며,
“발주기관”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- “계약상대자” 가 계약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

- “계약상대자” 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

-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
10 이상인 경우로서 “계약상대자”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
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“계약상대자” 의 부도, 파산, 해산, 영업정지, 사업 또는 영업에
관한 등록·인가·허가 등의 취소, 납세 의무 위반, 4대보험
체납, 최저임금법 위반,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을 곤란한 경우

- “계약상대자” 가 과업을 포기하는 경우

□ 분쟁 해결

○ “발주기관” 과 “계약상대자” 는 상기 명시된 합의내용을

준수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.

-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·예규와 “발주기관”의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가 합의하여 진행한다.
-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관할법원은 “발주기관”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.
- 과업 수행 중 분쟁이 발생할 시 과업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.